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

			극로	<u></u> 번주겨기언유	육성인프라구축					
				·견기업 육성)	7	접수번호				
연구개발과제명										
주관연구개발기관						연구책임자				
연·	구개발기	기간			2023.	5. 1. ~	2023. 12. 31	1. (8개월)		
TR	RL.	※ 연구종	료단겨	II의 TRL 기자	의 TRL 기재 시작품 제작 여부 O .					/ X
		시작품	· 내용 ※ 핵심 시작품 명칭, 목표 사양, 성능, 용도, 기능 등 구체적으로 명시							
시진	·푸	운영환	경				제환경(√), 기타			}
717	시작품		률	적용여부 관련법률	적용 (√) 비적용 () ※ 안전법률 적용 시, 적용되는 모든 법률 기재 예) 전기사업법, 화학물질관리법, 고압가스안전관리법, 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등					
사고	 의허			│ 감전() 폭발			<u>원다라, 고급기 관련</u> 은도 접촉(), 유해물 [:]			선기합 등
분류형							가능성 검토, 복수		. 1 1()	
			유	해 위험요인	파악		관련근거		위험성 추정	}
구분	위점	험성 요인		세부 유해 위험요인	위험요인	내용	법규/위험성 기준 등	가능성 (빈도)	중대성 (강도)	위험성
1	기계적	덕(설비) 요약	인	-	-		-	-	-	-
2	전:	기적 요인		-	-		-	-	-	-
3	화학적(물질) 요인		21	3.8	외부에서 팅 유입시 화재		안전보건 규칙 269호	중(2)	상(3)	6
4	생물학적 요인			-	-	. —	-	-	-	-
5	5 작업특성 요인			-	-		-	-	-	-
6	6 작업환경 요인			-	-		-	-	-	-
7	7 기타			-	-		-	-	-	-
					위험성 평가점수	합계				6
** 자가점검표 가이드라인 상 제시된 유해 위험요인 (기계설비, 전기, 화학물질, 생물학, 작업특성, 작업환경등) 해당여부 및 각 유해 위험요인별 빈도, 강도 등 검토하여 작성										
제출일자 : 2023. 4. 00.										
"—— ·							(인)			
							, ,			
	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: (인)						(인)			
신	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									

[※] 위험성 요인별로 세부 유해위험 요인은 위험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1개만 기입함

【첨부】작성기준

유해 위험요인 파악 분류 기준표

공정	위험성 요인				세부 유해 위험요인		
1	기계적(설비) 요인	1.1	협착 위험 (감김, 끼임)	1.2	위험한 표면(절단, 베임)	1.3	기계의 낙하 전복, 붕괴, 전도 위험부분
'	기계국(크미) 표현	1.4	충돌위험 부분	1.5	넘어짐(미끄러짐, 걸림)	1.6	추락위험 부분
2	전기적 요인	2.1	감전(안전전압 초과)	2.2	아크	2.3	정전기
			가스	3.2	증기	3.3	에어로졸
3	화학(물질)적 요인	3.4	액체·미스트	3.5	고체(분진)	3.6	반응성 물질
			방사선	3.8	화재/폭발위험	3.9	복사열/폭발 과압
	생물학적 요인	4.1	바이러스감염	4.2	유전자 변형물질	4.3	알러지 및 미생물
4	영물역식 표현	4.4	동물	4.5	식품	-	-
		5.1	소음	5.2	초음파 초저주파	5.3	진동
5	작업특성 요인	5.4	근로자 실수 (휴먼에러)	5.5	저압 또는 고압상태	5.6	질식위험 산소결핍
		5.7	중량물 취급작업	5.8	반복작업	5.9	작업 도구
6	작업환경 요인	6.1	기후/고온/한랭	6.2	조명	6.3	공간 및 이동통로
		6.4	주변 근로자	6.5	작업시간	6.6	조직 및 안전문화
7	기타	7.1		7.2		7.3	
/		7.4	사데 기사그 편기요	7.5		7.6	

※ (참조)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리스크 평가표

사고위험 분류 항목 및 안전관리 대상 기준(안)

위험 분류 항목	기준
감전	전기 접촉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
폭발	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개방으로 폭음을 수반한 팽창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
파열	용기 또는 장치가 물리적 압력에 의해 파열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
화 재	발화물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
이상 온도 접촉	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
유해물질 접촉	유해화학물질 접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
기타	상기 분류 이외의 사유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

중대재해 적용기준 : 고용노동부 시행령

중대재해		
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		
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		
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		

위험성 평가 산식

- o 유해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(빈도), 발생시 위험의 중대성(강도)을 곱하여 **위험성 평가점수 도출하고, 위험성** 크기별 안전과제 결정
 - ※ 위험성 평가산식은 고용노동부 2020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참조
- (위험성 평가) 가능성(빈도) x 중대성(강도) = 위험성 평가점수
 - **가능성(빈도), 중대성(강도) 추정 시 아래 기준을 참고하되,** 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정기점검 등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누락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**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**
 - 가능성(빈도) 추정 시 참고 기준

구분	내용	점수
상	1주일에 1회 정도 발생가능	3
중	3개월에 1회 정도 발생가능	2
하	1년에 1회 정도 발생가능	1

- 중대성(강도) 추정 시 참고 기준

구분	내용				
상	사망 (장애 발생)	안전사고로 인해 사망, 업무 복귀 불가능한 수준의 질병, 장애가 남는 부상 등 발생가능한 정도	3		
중	휴업 필요	안전사고로 인해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만, 일정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(완치 가능)한 부상 등발생가능한 정도	2		
하	휴업 불필요	안전사고로 인해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, 휴업이 수반 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등 발생가능한 정도	1		

○ 위험성 크기별 안전과제 결정여부

위험성 크기 (위험성 편	평가 전체위원 합계평균 기준)	안전과제 결정 여부
9점 이상	높음	안전관리형 과제 또는 제외 과제
5~8점	보통	제외 과제
1~4점	낮음	세외 피세